

# 『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『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서울시 협력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조례 개정을 통해 안 제12조 제3항에

시장이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, 조직체계 및 인력,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- 또한 안 제16조에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법인, 기관, 단체,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.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